

الميمى و مستشاركو
ALTAMIMI & CO.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

Published by Al Tamimi & Company

두바이 본사 (Head Office, DIFC)

6th Floor, Building 4 East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O Box 9275
Dubai, UAE

T: +971 4 364 1641
E: info@tamimi.com

KSA Offices – Head of Saudi Arabia:
Mohamed Khodeir (m.khodeir@tamimi.com)

리야드 사무소 (Riyadh Office)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Al Olaia Area
PO Box 300400
Riyadh, Saudi Arabia

T: +966 11 416 9666
E: inforiyadh@tamimi.com

사무소장: Grahame Nelson (g.nelson@tamimi.com)

젯다 사무소 (Jeddah Office)

King's Road Tower, 11th Floor
King Abdulaziz Road, Al Shate'a District
PO Box 9337
Jeddah, Saudi Arabia 21333

T: +966 12 263 8900
E: infojeddah@tamimi.com

사무소장: Rakesh Bassi (r.bassi@tamimi.com)

알코바 사무소 (Al Khobar Office)

Level 21, Khobar Gate Tower (Al Shaikh Tower)
King Fahad Road, P.O Box 32348
Postal Code 31952, Al Khobar, Saudi Arabia

T: +996 13 330 8433
E: infokhobar@tamimi.com

사무소장: Jonathan Reardon (j.reardon@tamimi.com)

Korea Group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건설, 인프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 년간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에서 한국기업들의 성장을 주목해 왔으며 다양한 한국 고객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전담 팀 "Korea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은 변호사가 이끄는 Korea Group은 2012 년부터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 정부기관, 공기업,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고객들에게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률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 결과, 현재 120여개 이상의 한국업체로부터 성실한 법률 고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orea Group은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4인 및 전문스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동 법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기업자문에서부터 대형 거래 및 각종 분쟁의 중재 및 조정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중동지역의 전문인력과 함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rea Group Key Contacts:

이종은 변호사
Jongeun (Christina) Lee
Head of Korea Group
j.lee@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Associate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James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박이세 변호사
Issey Park
Associate
issey.park@tamimi.com

강윤정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박인혜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김경수
Kyungsu Kim
Legal Assistant
k.kim@tamimi.com

About Al Tamimi & Company

중동 지역 (Middle East) 최대 로펌인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의 사업 환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 법률 자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1989년 UAE에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며, 현재는 GCC 6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은 물론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등 총 9개국에 17곳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60명의 파트너 및 350명의 변호사와 67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로펌으로서,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관, 중동 현지 은행 및 금융기관,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및 가족기업에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 로펌은 소송·중재, 은행·금융, 지적재산권·데이터 보안, 항공·해상, 프로젝트·인프라 파이낸싱, 부동산, 건설, 기업, 방송·통신·미디어, 보험 등 세분화된 전문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08년 리야드에 첫 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지속적인 확장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젠티와 알코바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는 각 국에 위치한 사무소와 협력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전담팀인 Korea Group은 한국 기업의 새로운 중동시장 진입 전략에 일조하기 위해, 저희 전문팀과 함께 중동에서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에서부터 관련 정부기관등의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사업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 등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법률 자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amimi.com

**UAE**

Abu Dhabi
Dubai, DIFC
Dubai Internet City
Dubai, The MAZE Tower
Ras Al Khaimah
Sharjah

BAHRAIN

Manama

EGYPT

Cairo

IRAQ

Baghdad
Erbil

JORDAN

Amman

KUWAIT

Kuwait City

OMAN

Muscat

QATAR

Doha

SAUDI ARABIA

Al Khobar
Jeddah
Riyadh

Foreword by Al Tamimi &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경제는 석유에 기반을 두고,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국 상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완화, 외국인투자 장려, 특정 산업의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교육, 보건, 운송·인프라, 수자원, 농업, 지방 자치제 서비스 분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분야로서, 외국업체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 대책모색 등 향후 국가 발전에 로드맵 역할을 할 “사우디 비전 2030 (Saudi Arabia’s Vision 2030)”을 공표했습니다. 해당 비전의 이행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산업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운동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개인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새로운 법인설립 시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내 최신 법제 정보 및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여러분 모두의 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ssam Al Tamimi
Senior Partner & Founder
Al Tamimi & Company



Husam Hourani
Managing Partner
Al Tamimi & Company



Mohamed Khodeir
Head of Saudi Arabia
Al Tamimi & Company



التميمي و شركاه
AL TAMIMI & CO.

Seeing the bigger picture

Al Tamimi & Company knows more than just the law. We focus on the here and now and also understand that our advice may affect the future. We therefore ensure our lawyers think about the situation at hand,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In a region where the legal landscape is never black and white, we have the knowledge, expertise and cultural awareness to make sure our clients are at the forefront of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17 Offices | 9 Countries | 350 Lawyers

www.tamimi.com

Foreword by KOTRA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주요 우방국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가이자, 최대 건설플랜트 수주대상국으로써 1970-80년대 제1차 중동 붐을 통해 우리 나라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사우디내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해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지연 내지 취소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주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유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야심차게 수립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30” 및 “National Transformation Plan” 의 과정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기존의 건설분야에 국한된 협력이 아닌, 제조, 보건의료, ICT, 방산,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문화, 관광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협력이 가능하기에 현재의 사우디는 우리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은 현지 법률 및 투자환경에 정통한 Al Tamimi & Co.에서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우디내의 사법체계를 포함하여, 최신의 회사법 관련 동향 및 투자 환경, 분야별 법률 내용을 담은 “Doing Business in KSA” 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디 본 가이드북이 사우디에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해안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KOTR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무역관

관장 양 기 모

Contents

Introduction.....	16
<i>About Saudi Arabia</i>	
<i>The Legal System</i>	
Saudi Vision 2030.....	22
Setting up in Saudi Arabia.....	28
Exporting to Saudi Arabia.....	38
Employment Law.....	42
Dispute Resolution.....	46
Government Contracting.....	50
The Banking Sector.....	54
Securities and Mortgages.....	58
Insolvency.....	62
Real Estate.....	66
Mining.....	69
Intellectual Property Law.....	72
Competition Law.....	76
Taxation.....	81
Saudi Stock Market.....	84
Anti-Corruption Laws.....	88



SAUDI

BAHRAIN

Riyadh[Ⓢ]

• Medina

ARABIAN

• Mecca

• Jeddah



Introduction

About Saudi Arabia

역사:

사우디아라비아는 1932년에 아랍국가에서는 Abdulaziz로 알려진 Ibn Saud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산유국 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랍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G-20 회원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스크로 꼽히는 메카에 위치한 Masjid al-Haram 모스크와 선지자 Muhammad 가 매장된 메디나의 Masjid an-Nabawi 모스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인구:

약 3,200만 명

종교:

이슬람교

화폐단위 (통화):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이 공식 화폐단위로, 달러대비 고정환율을 택하고 있으며, 1달러 (USD) = 3.75 리알 (SAR) 입니다.

언어:

공식언어는 아랍어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됩니다.

정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국가 원수 (Head of State) 및 총리 (Head of Government)를 겸하고 있습니다.

법률체계 (The Legal System)

샤리아 (Shari'ah)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로서, 통치기본법 (Basic Law of Governance)에 따라 Sunnah (선지자 Muhammad의 사상)와 더불어 신성한 코란 (Holy Qur'an)을 헌법으로 삼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샤리아 (Shari'ah) 율법을 구성합니다.

국정운영 (Governance)

사우디아라비아는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이 통치를 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슈라 위원회 (Shoura Council)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슈라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지도자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Salman 국왕은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의 구성원이며, 이러한 각료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다양한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지역 (Emarah/Principality)은 주지사 (Governor) 혹은 왕자가 시의회와 협의하여 관할하며, 시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과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사법부 (Judiciary)

통치기본법 (Basic Law of Governance)과 사법부 법 (Law of the Judiciary)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약우선의 원칙 (Contracts are fully enforceable)

사우디아라비아 내 계약의 체결 및 집행은 샤리아 (Shari'ah) 율법을 따르지만, 이와 관련한 법규가 별도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샤리아 (Shari'ah) 율법 하에서 계약의 경우, Sunna와 신성한 코란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구속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통용되는 샤리아 (Shari'ah)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한 이자 (riba) 지급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계약내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법과 샤리아 (Shari'ah) 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기본적인 샤리아 (Shari'ah)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샤리아 (Shari'ah) 율법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Saudi Vision 2030 and The National Transformation Plan



사우디 비전 2030 과 국가개혁계획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경제 다각화를 모색하고, 저유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회·경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 및 사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개혁계획 2020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이하 "NTP")을 발표하였으며, 총 24 개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부처가 다양한 전략적 구상을 통해 2020 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과 NTP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투자뿐만 아니라 다수 공기업의 민영화 및 다양한 산업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NTP 시행 예상비용 (향후 5년간)	예상비용	비율
정부	2,68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78조원)	60%
민간부문	1,79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52조원)	40%
합계	4,47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0조원)	100%

A. 사우디 비전 2030 및 NTP 주요내용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지출을 줄이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경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산업** -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장비 지출의 50% 현지화 달성
- **광업** - 2020년까지 97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8조원)에

달하는 대폭 성장 및 9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비석유부문* - 2020년까지 탄화수소 의존율 감소 등 비석유부문의 개발장려
- *오일 및 가스* -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지화 수준을 현재의 40%에서 75%로 상향 및 가스보급망 구축을 통한 국내 가스생산량 증대
- *민간투자* - GDP의 민간비율을 40%에서 65%로 증대 (에너지·헬스케어·주택·지자체서비스 부문 중심)
- *사우디 석유공사 (Saudi Aramco) 기업공개/상장*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소유한 사우디 석유공사의 지분 5%를 상장하여 공모금액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ublic Investment Fund (이하 "PIF")에 편딩
- *해외투자* - PIF를 USD 3조 (한화 약 3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국부펀드로 성장
- *민영화* - 사우디아라비아 내 다양한 정부자산의 민영화
- *재생에너지 산업* - 민간부문의 참여 독려
- *소비·무역부문* -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수백만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 - 비정부기관 내 취업자 중 고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율을 6%에서 15%로 증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 장려
- *헬스케어 부문* -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지출비중을 기존의 25%에서 35%로 증가를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 장려 및 다양한 민간협력 모색
- *주택 부문 (NTP 중 정부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 - 주택건설프로젝트의 민간투자장려를 위해 Fast Track License 및 Special Finance Package 제공 및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소유 부지 내 주택건설을 위한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 *Jubail-Yanbu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for Jubail and Yanbu; 이하 "RCJY") (NTP 중 주택 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예산규모를 차지)* -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구조의 다양화·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제품군 증대

- **해외투자** – 외국인직접투자를 기존의 30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8조원)에서 70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8조원)로 증가 및 투자승인기간 단축
- **통신산업** – 고속광대역 (high speed broadband)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망 구축 및 개발
- **운수업** – 국내·외 인프라구축을 통한 물류허브 (logistics hub) 조성

2016년에는 총 534개의 계획안이 승인을 받았고,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70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72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외 기업 모두 사우디 비전 2030과 NTP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B. 투자 기회

사우디 비전 2030과 NTP의 발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예정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국내·외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기관이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안에는 주택·스포츠센터·공공시설 건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육·헬스케어·지자체서비스·에너지·환경·제조업·오일 및 가스·운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형태는 주로 합작회사 (Joint Ventures) 혹은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이하 “PPP”)의 형태를 띠 것으로 기대되며, PPP를 관할하는 신규 법령공표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 및 채권자 등도 다양한 민영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tting up in Saudi Arabia



Setting up in Saudi Arabia

A.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내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GCC 국가를 제외한 모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면허 (Foreign Investment License)를 취득해야 하고, 가장 적합한 사업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 산업부문, 세금 및 자산용 세금(Zakat¹) 등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B. 외국인투자 (Foreign Investment) 관련규정

외국인투자면허 (Foreign Investment License)

2000년에 공표된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외국인투자규제를 관할하는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운영 (commercial operations)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이하 "SAGIA") 으로부터 외국인투자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professional companies)의 경우 외국인투자면허 취득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만약 외국인투자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Anti-Concealment Law를 위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이름, 면허정보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 투자 (fronting arrangement)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등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면허 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조건 및 유의사항은 SAGIA 홈페이지 (www.sagia.gov.s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소유 (Foreign Ownership)의 허용범위

외국인투자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최대 100%까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최소 소유지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업활동	외국인의 최대지분보유율
서비스	100%
제조업	100%
도·소매 무역업	75-100% ²
전문서비스	75% ³

The Negative List

일부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활동은 'Negative List'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이 포함됩니다:

- 채굴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석유 탐사·시추·생산
- 군사장비 및 군복 제조
- 민간 폭발물 제조
- 군 부대 식품납품
- 보안 및 경비 서비스
- Makkah와 Madinah 지역 내 부동산투자
- Hajj (무슬림에게 의무적인 성지순례) 및 Umrah (무슬림의 비의무적인 자발적인 성지순례)와 관련한 관광서비스
- 현지 에이전시를 포함한 채용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 및 출판 (예외사항이 존재함)
- 독점판매권, 대행업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 (Commission agents)
-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기차를 제외한 운송수단 서비스

-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응급구조 등과 관련한 서비스
- 양식업
- 혈액은행, 약물관리센터, 격리시설

외국인투자면허 취득 소요기간

면허신청기간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하려는 회사의 형태와 면허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면허는 모든 서류 제출 후 2 - 4주 안에 발급됩니다.

C. 회사의 유형

개요

경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가능한 사업구조가 여럿 존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내용, 세금, 법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파트너의 유무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역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은행 금융, 이동통신 등의 특정 산업은 의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파트너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는 새로운 회사법 (Companies Law) 이 공표되어 기존의 법을 대체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본 책자에 포함하였으며,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사설립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가장 흔한 회사유형입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LLC는 광범위한 사업활동에 적합하고,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회사유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지닌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Joint Venture) 설립 시에도, 대개 법인 형태는 LLC의 구조를 띄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설립되는 모든 LLC는 해당 법인명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LLC는 직접 스폰서가 되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LLC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개발기금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LLC의 사업활동은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및 외국인투자면허 (Foreign investment License)에 명시된 활동들로 제한됩니다.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본인이 투자한 자본금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6년 회사법 개정 이전에는 LLC의 손실액이 자본금의 50% 이상에 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LLC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주들이 개인적으로도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었지만, 개정 후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개인주주들에게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최소 자본금은 SAGIA 또는 통상·투자부/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 이하 "MOCI") 에서 외국인투자면허 승인과정 시에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활동	최소 자본금 요건
서비스 (Services)	5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억원)
제조업 (Manufacturing)	10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6억원)
도 · 소매 무역업 (Trading (wholesale and retail))	2,60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67억원) (외국인투자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인 약 2,000만 사우디 리알 포함) ⁴
전문서비스 (Professional Companies)	5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억원) (권장 수준)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해당 기업의 사업활동과 초기 5년 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상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식 (Shares)

모든 LLC는 최소 1명부터 최대 50명에 이르는 주주⁵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오로지 한 종류의 주식만 보유가 가능하며, 의결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주주는 전체자본금의 최소 5%에 달하는 지분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LLC의 경우, 주식공모는 불가능하며, 은행·보험 등과 같은 특정 사업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 (Transfers of Shares)

주식양도는 계약상의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s) 및 관련기관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경영권 (Management)

LLC는 한 명의 매니저 (manager)를 둘 수도 있고, 다수로 구성된 이사회 (Board of managers (directors))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LLC의 주주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니저 혹은 이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주허가증 (Iqama)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지사 (Branch Office)

만약 외국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파트너 없이 회사설립을 희망할 경우,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지사설립의 장점은 비교적 빠르게 설립이 가능하고, SAGIA 허가 하에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사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으로 50만 사우디 리얄 (한화 약 1.3억원) 입니다.

지사의 경우, 모회사 (본사)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사의 사업활동은 본사가 영위하는 사업활동을 벗어날 수 없으며, 본사는 지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계약 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가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이하 “JSC”)

JSC는 주식공모 가능여부에 따라 주식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open)”과 불가능한 “폐쇄형 (closed)”으로 나뉘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인 Tadawul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은 주식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JSC지만, 은행·금융 등 특정 사업활동은 주식공모 여부에 관계없이 JSC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JSC는 최소 5백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일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JSC는 반드시 최소 2명의 주주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LLC와 마찬가지로 채무책임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Director)가 일정 비율의 회사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하던 규정은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JSC 설립자가 보유한 주식은 JSC의 재무제표 발행연도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JSC 설립을 위해서는 5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억원)에 달하는 최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통해, JSC는 재무제표를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합니다.

임시법인등록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 이하 “TCR”)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계약의 경우, 투자자는 TC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정은 지사와 비슷하지만, 외국인투자면허 지원 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적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CR의 발급은 정부 또는 준 정부계약을 수주한 기업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해당 프로젝트를 발주한 정부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계약서 또는 낙찰서 (letter of contract awar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발급이 가능한 TCR의 가장 큰 단점은 허가된 활동이 낙찰받은 계약 및 프로젝트의 조건 및 범위로 제한 되어있고, 일반적인 사업활동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Technical Scientific Office; 이하 "TSO")

외국기업은 TSO를 설립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과학·기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TSO는 상업활동 또는 수익창출에는 관여할 수 없고, 기술정보 및 시장·기술관련 리서치 제공만으로 사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설립과정은 지사와 비슷하지만, 최소 자본금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 (Saudisation)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10명 이상도 가능).

TSO는 외국인 투자규정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하의 투자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문서비스 회사 (Profesional Companies)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건축·엔지니어링, 법률, 회계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전문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전문서비스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협회 (Saudi Council of Engineers) 에 가입한 엔지니어 등 특정 분야의 면허를 지닌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개인/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협회의 경우, MOCI의 관할 하에 있는 준 정부기관으로, 합작투자 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서비스 회사의 경우, LLC보다는 개별파트너로 구성된 파트너쉽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파트너들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파트너들간의 채무 분배는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투자자는 전문서비스 회사의 지분 중 최대 7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200 - 500,000 사우디 리얄 (한화

약 52,000원 - 1.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요구되지만, 실제 자본금액수는 파트너들끼리 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문서비스 회사는 SAGIA 외국인투자자면허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 8월 SAGIA는 외국회사의 100% 지분보유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이 가능함을 발표했으며, 해당 업체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SAGIA에서 요구하는 모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최신 재무제표,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결의안과 더불어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경력뿐만 아니라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Foot Notes:

1. 종교세의 일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2. SAGIA 는 외국기업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한 무역회사 설립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천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80억원)에 달하는 최소자본금과 향후 5년 이내에 1.7억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448억원) 추가투자 및 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2017 년 8월 SAGIA는 외국회사의 100% 지분보유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이 가능함을 발표했으며, 해당 업체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SAGIA에서 요구하는 모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최신 재무제표,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결의안과 더불어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경력뿐만 아니라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의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gia.gov.sa/en/mediaandEvents/News/Pages/News07082017_2.aspx)
4.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75% 이상 지분보유를 희망하는 경우, 더 많은 최소 자본금과 기타 조건이 적용됩니다.
5. 5 2016년에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주주 1인으로 구성된 LLC도 설립가능하지만, 아직까지 SAGIA는 외국인투자자의 1인 LLC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최소 2인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SAGIA에서는 기존의 LLC (즉,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LLC)를 단일주주로 구성된 LLC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porting to Saudi Arabia



Exporting to Saudi Arabia

별도 법인설립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커머셜 에이전트 (Commercial Agencies)

외국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커머셜 에이전트”로 잘 알려진 유통업체 (distributorship), 대행업체 (commercial agency) 또는 프랜차이즈 (franchise)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자사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커머셜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해당 에이전트는 사업활동 개시 3개월 이내에 MOCI에 해당 계약을登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만이 커머셜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커머셜 에이전트는 제품의 품질보증은 물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부품공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커머셜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은 없지만, 자신들이 구축한 유통망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근거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登記말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기도 하나,登記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커머셜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입품목 승인절차 (Approvals for the Import of goods into Saudi Arabia)

외국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품목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과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입 에이전트 (import agents)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활한 통관절차를 위해 모든 수입품목들은 수출품 인증제도인 “강제 적합성 인증검사제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 인증은 수출국 (country of origin) 공인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표준청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sation; 이하 “SASO”)은 라벨부착 및 시험·검사 등 전체적인 품목을 관리하는데, 수출업체는 강제적합성 인증신청 시, 수출품목이 SASO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들은 품목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원산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통관 시 필요서류 (Export documentation)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랍어로 번역된 상업송장 (Commerical Invoice with Arabic translation)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
- 상선 또는 항공사 증서 (Steamship or Airline Certificate)
- 수출업자가 해당 품목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증서 (Insurance Certificat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상기 서류 외에도 품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The Business Visit)

GCC 국적보유자를 제외하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은 여행 전 방문비자 (Visit visa)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발급을 위한 초청장은 현지 사업자와 외교부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신청을 원하는 개인 기업은 현재 체류중인 국가소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해당 비자로 가능한 최대체류기간은 1개월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전 비자신청 시에는 비자발급 지연을 염두에 두고, 준비기간을 여유롭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Employment Law

Employment Law in Saudi Arabia

노동법 (The Labour Law)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법은 2005년에 발표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을 거쳐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법으로 자리잡았으며, 해당 법은 노동 사회개발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에서 관할합니다.

고용계약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본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히 본 노동법을 통해 고용계약의 체결과 해지, 연차, 정년퇴직 연령, 퇴직금 산정, 근로자의 최저연령 (현재 14세 이상) 등이 결정되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Non-Saudis)

외국인은 관련기관에서 사전승인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여권발행국가 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고용비자 (employment visa) 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일 기준으로 90 일 이내에 근로허가증과 거주허가증 (Iqam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계약 (Employment Contracts)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 하에서 고용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계약과 고용만료기간이 없는 무기한계약으로 나뉩니다. 기간제계약은 외국인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을 소유한 개인에게 해당되며, 무기한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을 지닌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무기한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는 합법적 사유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역월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계약해지통지는 최소 6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금전적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수습기간 (Probationary Periods)

고용주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이 고용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고용주가 수습기간 이내 혹은 종료 시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 · 의료보험 (Social and Health Insurance)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보장제도 (Social Insurance Regulations)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매달 사회보험청 (General Organisation for Social Insurance; 이하 "GOSI")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비율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법정 공휴일 및 연차휴가 (Public Holidays and Annual Leave)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노동법 하에서 근로자들은 21일의 연차휴가(유급)를 부여받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 하에서 5년간 근속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순례휴가 등 종교관련 휴가, 무급휴가, 학업휴가, 병가 등과 관련한 내용도 모두 노동법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End of Service Benefits)

고용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첫 5년간은 매년 월 급여의 1/2,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만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의 경우, 고용주의 부당해고 또는 근로자의 사직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의무고용제 (Saudisation; 이하 “Nitaqat Programme”)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설립을 한 외국인투자자는 각 사업분야에 일정 수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Nitaqat Programme을 유념해야 하며, 기업의 유형, 산업뿐만 아니라 직위에 따라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수는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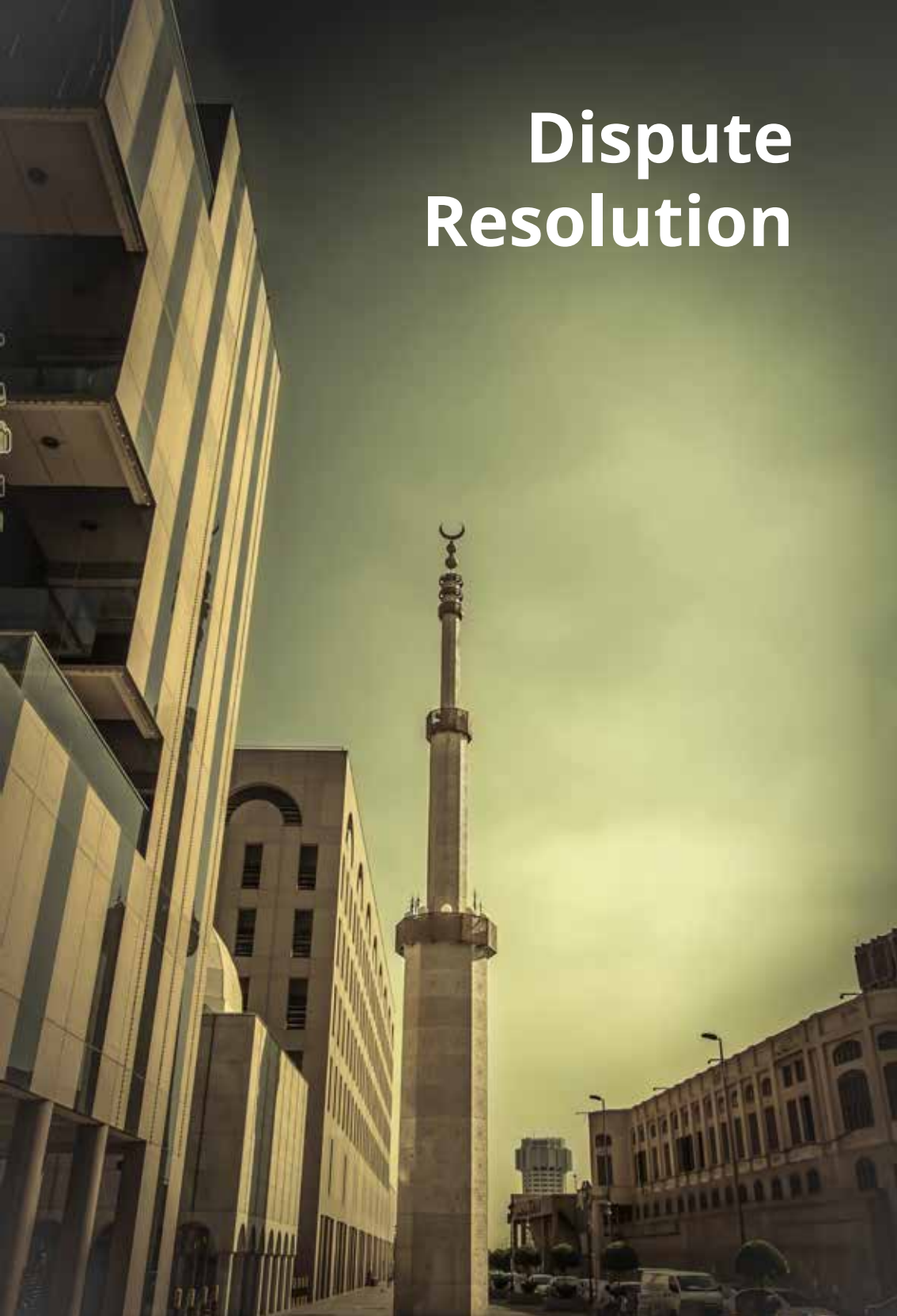
2011년 노동부는 Nitaqat Programme 을 도입했고, 각 기업이 할당받은 인원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Nitaqat Programme 하에서 기업들은 Platinum, Green, Yellow 그리고 Red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의무고용제의 적용비율에 따라 분류됩니다. Platinum과 Green에 속한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시, 특혜가 주어질 수 있으나, Yellow와 Red로 분류된 기업들은 비자신청 및 근로허가 취득 시 많은 제약을 받고, 근로자들이 Platinum 또는 Green에 속한 기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비자 (Visas)

외국인근로자들은 우선 근로허가비자 (work permit vis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이후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거주허가증 (Iqama)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거주허가증은 사우디아라비아 은행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에 필수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거주허가증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Dispute Resolution



The Saudi Court System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원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법원 (General Courts)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법원에서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및 부동산 관련분쟁을 다루며, 형사법원 (Criminal Courts) 및 Personal Status Courts 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Ministry of Justice) 의 관할을 받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노사분쟁 및 상사분쟁에 특화된 2 곳의 법원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법원은 1심법원 (First Instance Courts), 항소법원 (Appellate Courts) 그리고 3심법원 (High Cour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 (Board of Grievances or Administrative Court)

행정법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과의 분쟁을 담당하며, 현재까지는 상사분쟁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추후 상사분쟁 특화법원이 설립되면, 상사분쟁은 해당 법원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법원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국왕에게 보고를 하게되며, 일반법원과 동일하게 1심법원 (First Instance Administrative Courts), 항소법원 (Appellate Administrative Courts) 그리고 3심법원 (High Administrative Court)으로 구성됩니다.

준 사법위원회 (Quasi-Judicial Committees)

준 사법위원회 (Quasi-Judicial Committees)는 특수한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분쟁을 담당하며, 개별 분쟁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금융분쟁위원회 (Banking Disputes Committee) –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관할 하에 있음

- 증권분쟁조정위원회 (Committee for Resolution of Securities Disputes) –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금융감독청 (Capital Market Authority; 이하 "CMA")의 관할 하에 있음
- 관세분쟁위원회 (Customs Committee for Customs Disputes)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의 관할 하에 있음

이러한 준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상부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 (Judicial Reforms)

2007년에 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은 사법개혁을 목표로하는 칙령 (Royal Decree)을 발표했고, 이 중 일부 개혁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재 (Arbitration)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 또는 소송 선택여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분쟁이 국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공식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일 경우,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없이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 리야드에는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 중재센터 (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법 (Saudi Arabia's Arbitration Law)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새로운 중재법을 공표했으며, 해당 법에는 중재인 선임을 포함한 중재 합의 관련 필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원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판결로써,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중재 판정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중재판정의 집행

집행법 (Execution Law)

2012년에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집행법 (Execution Law)이 공표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다루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판정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랍연맹과 GCC 국가의 중재판정 집행 (Arab League and GCC State court judgements)

상호 판결승인 (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의 영향을 받는 아랍연맹조약 (Arab League Treaty) 서명국가와 GCC 국가 간의 중재집행협약 (Agreement on Enforcement of Judgements), 위임 (Delegation) 그리고 사법소환 (Judicial Summonses)은 해당 판정이 이슬람 규율 및 공공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비아랍국가의 중재판정 집행 (Non-Arab state arbitration court judgments and awards)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는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관련국가가 상호 판결승인국이 아니거나, 해당 중재 판정이 샤리아 율법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비아랍국가의 중재판정 혹은 법원판결의 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주요사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비아랍국가의 중재판정 및 법원의 판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overnment Contracting



Government Contracting

2006 년에 발표된 정부입찰 및 조달법 (Government Bids and Procurement Law)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으로의 물품 서비스 공급을 관할하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공개 (Tenders)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한 입찰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업체 (Bidders)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특정 산업분야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프로젝트 계약의 경우, 입찰 시에 입찰참가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업자등록증 (Commercial Registration)을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최종입찰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군사장비 공급, 독점공급업체, 용역 및 기술계약 등 일부 특정계약은 본 입찰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 (Bids)

입찰은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 - 2%에 달하는 은행보증액을 필요로 하며, 입찰공시일 기준으로 90일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참가업체가 해당 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게 되면 은행보증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낙찰자와의 계약 (Contract Phase with Successful Bidder)

모든 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공식언어는 아랍어입니다. 계약서 양식은 재정부에서 주관하며, 영문본이 존재하더라도 아랍어본이 항상 우선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금액이 5백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 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정부기관은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해당 계약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재정부의 별도 승인없이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최종낙찰자는 낙찰확정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5%에 달하는 은행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불한 은행보증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후순위 업체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계약범위 내에서 최대 10%까지 증액하거나 20% 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 지급, 계약만료 연장, 위약금 등의 내용은 모두 조달법 (Procurement Law)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기관 채무 불이행 (default)의 경우, 시공사는 보상위원회 (Compensation Committee)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는 법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The Banking Sector

The Banking Sector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The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이하 "SAMA")

SAM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자 금융규제기관입니다.

면허 (Licenses)

SAMA는 금융업 면허발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사우디아라비아 내에는 자국 내 금융기관들과 외국계 은행의 지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은행들은 일반 은행업무와 투자 및 증권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고,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자문 (advisory) 및 증권 서비스 (securities services)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의 은행개혁 (Recent banking industry reforms)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주요 은행부문의 개혁을 위한 법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모기지법 (Real Estate Mortgage Law)

부동산 모기지법은 저당권 등록을 위한 법으로, 양도담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법은 궁극적으로 주택금융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주도를 통해 대출관련 비용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파이낸싱법 (Real Estate Financing Law)

해당 법은 부동산 파이낸싱 업체도 SAMA로부터 면허취득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법 (Law on Supervision of Financing Companies)

금융감독법은 SAMA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금융기관의 규제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JSC 형태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리스법 (Finance Lease Law)

금융리스법은 자산리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자산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Securities and Mortgages

Securities and Mortgages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간 선박, 항공기, 자동차, 토지, 특정 법인의 주식, 지적재산권 등 특정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담보등기가 매우 어려웠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토지 (Land)

토지 담보법 (Registered Land Mortgage Regulation) 하에서는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인 토지를 이용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담보의 경우, 샤리아 (Shari'ah) 율법 하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자취득의 형태를 띌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인이 등기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공증절차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는 모든 채무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권리증서 (Title Deeds)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권리증서의 원본이 필수이므로, 채무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의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 Company)에 등록하는 방법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모든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부동산 이전이 됩니다.

유동자산 (Moveable Assets)

2004년에 발표된 커머셜 모기지법 (Commercial Mortgage Law) 에 의해 선취특권 등록을 위한 단일기관 (Unified Centre for Lien Registration; 이하 "UCLR")이 설립되었으며, UCLR은 최근 운영을 시작하여 유동자산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유동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 미래 자산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자산이어야 하고

- 채무자의 소유여야 하고
- 채무자의 뜻대로 처분이 가능해야 하고
- 교환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자산의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UCLR 하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은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일련번호가 등록된 장비 등 식별이 가능한 개별품목 (Individual Items)
- 재고, 매출채권 등 개별 일련번호 등을 보유하지 않는 일반 담보물 (General Collateral)

담보등록 후 법적구속력 등 UCLR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담보법 (Commercial Pledge Law)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공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법이 공표될 경우, 제 3자에게 담보권 등기와 관련하여 통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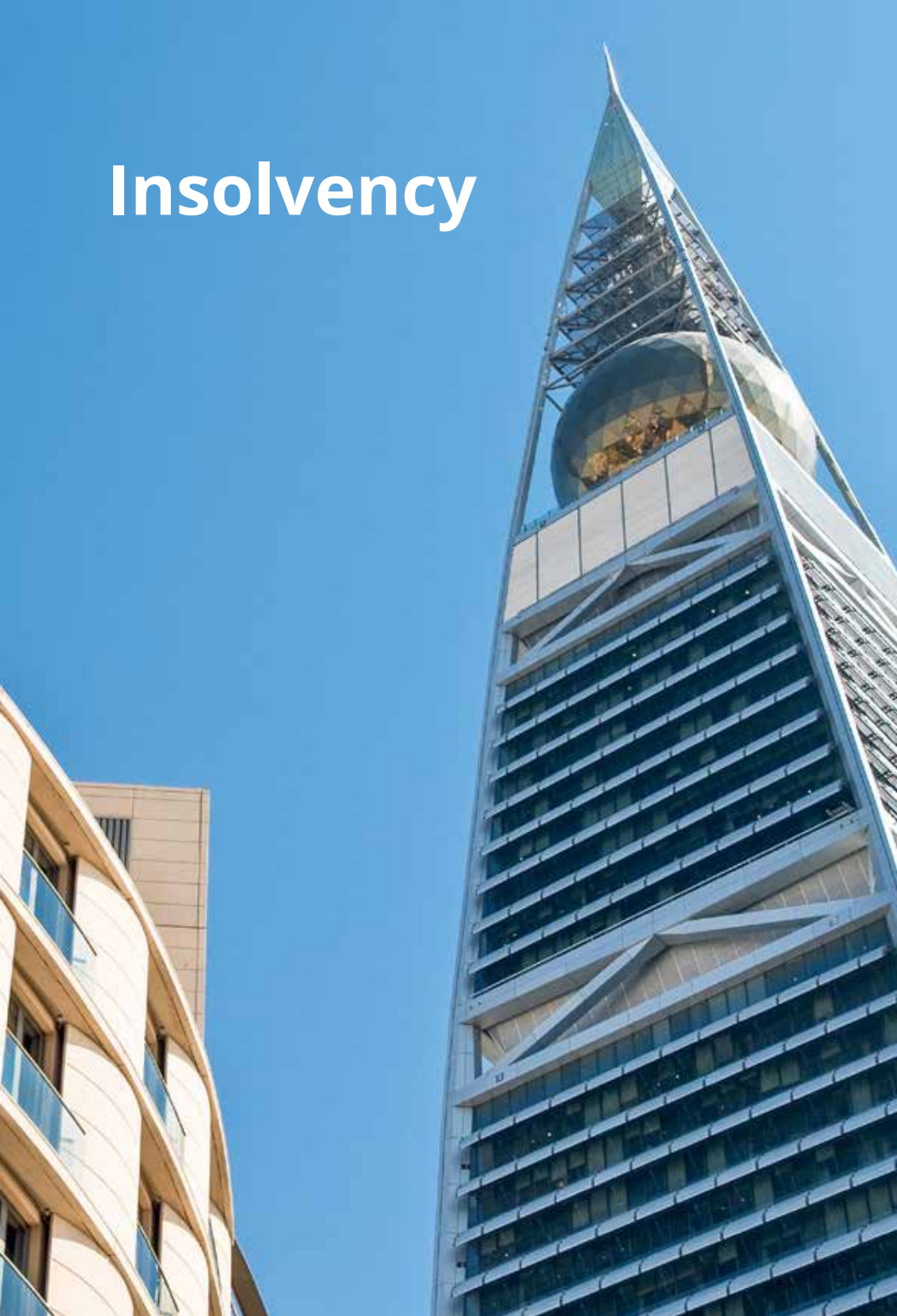
또한 새롭게 제안된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가합니다.

- 미래에 발생할 채무 등 미래에 발생할 의무와 현금예금에 대한 담보
- 제 3자에게 이전된 담보자산의 추적
- 동일 자산에 대한 한 개 이상의 담보

새롭게 제안된 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담보권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며, MOCI는 본 법안을 토대로 자산담보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Insolvency



Insolvency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는 별도의 도산법은 없으나, 중개업체 (traders) 들의 도산 등을 다루는 상업법 (Commercial Court Law)과 회사법 (Companies Law) 이 일부 도산·파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청산 (Liquidations)

MOCI에서는 파산한 기업들의 청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파산할)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채무 및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행정법원 (Board of Grievances) 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관련내용 검토 후, 파산선고 및 해당 회사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선고일 기준으로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향후의 계약체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파산 과정을 밟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도산법 제정 제안 (Proposed Insolvency Law Reform)

2015년 MOCI는 다른 나라의 법규를 벤치마킹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 도산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내역에는 중개업체와 비 중개업체 간의 구분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파산 특화법원 및 규제기관 설립을 통한 파산기업의 관리·감독 강화
- 채무금액 및 절차 등 유사 사건을 통한 채무자 분류
- 합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집행과정 중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최종 합의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회생: 파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공식적인 파산절차이며, 파산 집행인 (insolvency practitioner)이 선임되어 채무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최종 합의내역을 확인해야하고, 채권자에 합의내역 이행을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업청산 (법원보다 파산 집행인이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 법인의 책임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자산에 한정하고, “법인격 인정” 원칙을 유지하나, 과실 및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주주·이사 등에 별도의 제재를 부여합니다.



Real Estate



Real Estate

부동산 매입 (Who can own land?)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부동산 매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제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에 따라 해외 기관·개인의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GCC 국적의 회사 (모든 주주들이 GCC 국적보유자로만 구성된 기업 혹은 GCC 국적을 소유한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및 제약에 따라 상이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거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Mecca와 Medina 부근에 위치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GCC 국적이 아닌 해외 기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더라도, 해당 지분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된 회사는 “해외 기관”으로 분류되어 자본금 및 투자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면허 (Foreign Investment License)를 필요로 합니다.

-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 전문적 (professional), 기술적 (technical) 또는 경제적 (economic) 활동을 하는 경우
 - 공식적으로 등록된 프로젝트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숙소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한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규 등기 시스템 (New Land Title System)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동산 양도 및 등록과정의 현대화를 위해 자국 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해당 관할지역의 부동산 관련부서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부분적 소유 (Strata/fractional Ownership)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건물의 “부분적 소유”를 관할하는 부동산소유법 (System of Ownership of Units)을 공표했으며, 해당 법은 개인 소유가 가능한 유닛들로 이루어진 건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양 규제 (Off the Plan Sales)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부동산 분양 규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입자와 부동산 업체의 권리보호
- 투명성 확보
- 투기 및 부동산 거품 (real estate bubbles) 방지
- 부동산 보유비용 감소
- 사우디아라비아 전역 내 부동산 공급량 증가



Mining

Mining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인산염과 보크사이트, 금, 은, 납, 아연, 구리, 철광석, 희토류 등 상업적 가치를 지닌 광물 매장층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되는 광물자원의 거대한 매장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광업회사이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Ma'aden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Ma'aden 지분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PIF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Tadawul)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는 방대한 양의 지질정보, 지도, 보고서 등 광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광업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 광업법 (Mining Code)이 공표된 바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조광료 (mineral royalties)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업을 위해 필요한 비개발면허 (Non-exploitation license)와 개발면허 (Exploitation license)는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개발면허에는 2년간 유효한 정찰·자원수집 면허 (Reconnaissance and Material Collection Licenses)와 3년간 유효한 탐사면허 (Exploration Licenses)가 포함되며, 탐사면허의 경우, 탐사허용지역은 반경 100 제곱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개발면허에는 채굴·채석 면허 (Mining and Quarry Licenses)가 포함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은 모두 30년입니다. 단, 소규모의 채굴면허는 20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건설자재를 위한 채석 면허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탐사면허와 개발면허는 에너지 산업 광물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서로 호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비전 2030과 NTP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업부문에 있어 2020년까지 970억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8조원)에 달하는 대폭 성장 및 9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n aerial night photograph of a city, likely San Francisco, featuring a prominent river or bay area that glows with a vibrant green light. The surrounding urban landscape is illuminated with warm yellow and orange lights, creating a stark contrast with the cool blue tones of the water and the deep green of the glowing area. The text "Intellectual Property"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image.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법 (Patents Law)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Patents Law)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특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취득이 가능한 발명품
- 집적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 식물종
- 산업용 디자인

특허법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기술원 (King Abdul-Aziz 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관할합니다. 해당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청 (Patent Office)"의 역할을 하며, 특허 출원·발급을 담당하는 부속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및 외국인 모두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 레이아웃 디자인: 출원일 또는 레이아웃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부터 10년 (단, 디자인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최대 15년까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물특허: 일반적으로 출원일 기준으로 20년 (단, 나무의 경우에는 25년의 법적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 산업용 디자인: 출원일 기준으로부터 10년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협력조약 (Patents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가입 당일 또는 그 이후의 특허출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PCT 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Trademarks)

2002년에 공표된 상표권법 (Trademarks Law)은 서비스 마크를 포함한 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상표권 등록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와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절차 과정은 MOCI가 관할하며, 상표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과중한 벌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보상을 위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소유자는 민·형사 소송 이전에 상표권 침해를 한 개인 기업을 상대로 물품·문서 압수 등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2003년에 공표된 저작권법 (Copyright Law)은 문학, 예술·과학,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표현수단, 저술작업 등을 보호하는 법으로, 번역, 편집, 데이터베이스 등 본래 작업에서 파생된 창작물도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수명과 동일하게 보호되며, 사후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방송물의 경우, 첫 방영 이후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벌금, 위반제품 압수, 사업중단, 징역 등 저작권 침해 시 처벌조치 및 수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저작권 협정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과 문학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정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의 회원국으로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쟁법 (Competition Law)을 도입하여, 2005년 1월부터 해당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법 및 관련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독점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Competition Council)에서 해당 법을 집행합니다.

경쟁법의 적용대상 (Who does the Competition Law apply to?)

경쟁법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에 적용되지만, 정부 등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쟁법의 목표 및 적용 (What does the Competition Law do?)

경쟁법은 공정한 경쟁 장려 및 독점행위 규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 간 협의내용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협의 및 계약 체결을 금지합니다.
- 시장 내에서 일부 기업의 독점권 확보를 제한합니다.
-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경쟁법 상의 규제내용 (What sort of practices and agreements are prohibited?)

- 경쟁법 제 4조에 따르면,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간의 계약 혹은 협의내용이 시장 내 사업활동과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계약 및 협의는 내용 (서면, 구두, 암시 등)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시장 내 경쟁기업의 공정거래를 제한하거나 위반하는 담합 및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제 4조를 위반하는 일부 금지행위가 시장 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반 경쟁행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내 우위의 남용 (Abuse of Dominating Position)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내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배적인 우위를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내 우위가 있다는 것은 12개월 동안 시장 내 전체판매율 중 40%를 점유한 경우 또는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에 언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시장 내 우위의 “남용”은 경쟁법 제 4조 및 제 6조에 나와있는 행위들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통제
- 재화 및 용역의 원활한 공급 방해
- 시장 진입 및 퇴출 장벽
- 경쟁기업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행위
- 시장 분할
- 소비자 차별
- 자사의 소비자가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Third Line Forcing)
- 특정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해당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First Line Forcing)

경제력 집중 (Economic Concentration)

경쟁법 상의 시장 내 우위 점유와 관련한 조항은 경쟁기업과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Economic Concentration)’을 이뤄내는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제력 집종을 실현하여 시장 내 전체 재화공급량의 40%를 점유하려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경제력 집중이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포함한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해당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승인거부와 관련한 특별한 공시가 없을 경우 경제력 집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관련조사 (Complaints)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의 조사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처벌 (Penalties)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 중지 및 자산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Compensation)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axation



Taxation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주하는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투자자·주주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모두 법인세 부과대상이며, 법인·지사 모두 세금관련 부서 (General Authority for Zakat and Income Tax)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법인 소득의 20%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을 지닌 기업에는 2.5%의 종교세의 일종으로 자선용 세금 (Zakat)이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기업이 보유한 지분 및 기타 자산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조세법 (Saudi Arabian Tax Law)은 소득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양도소득 (Capital gains)의 경우 일반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관세 (Customs Duty)

관세율은 품목의 유형과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재는 면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세율은 약 5% (배당금, 이자, 용역대금, 해외지점으로의 송금 등) 에서 15% (로열티, 일부 용역대금 등) 사이이며, 이중과세조약에 따라 비 거주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2017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른 GCC 국가들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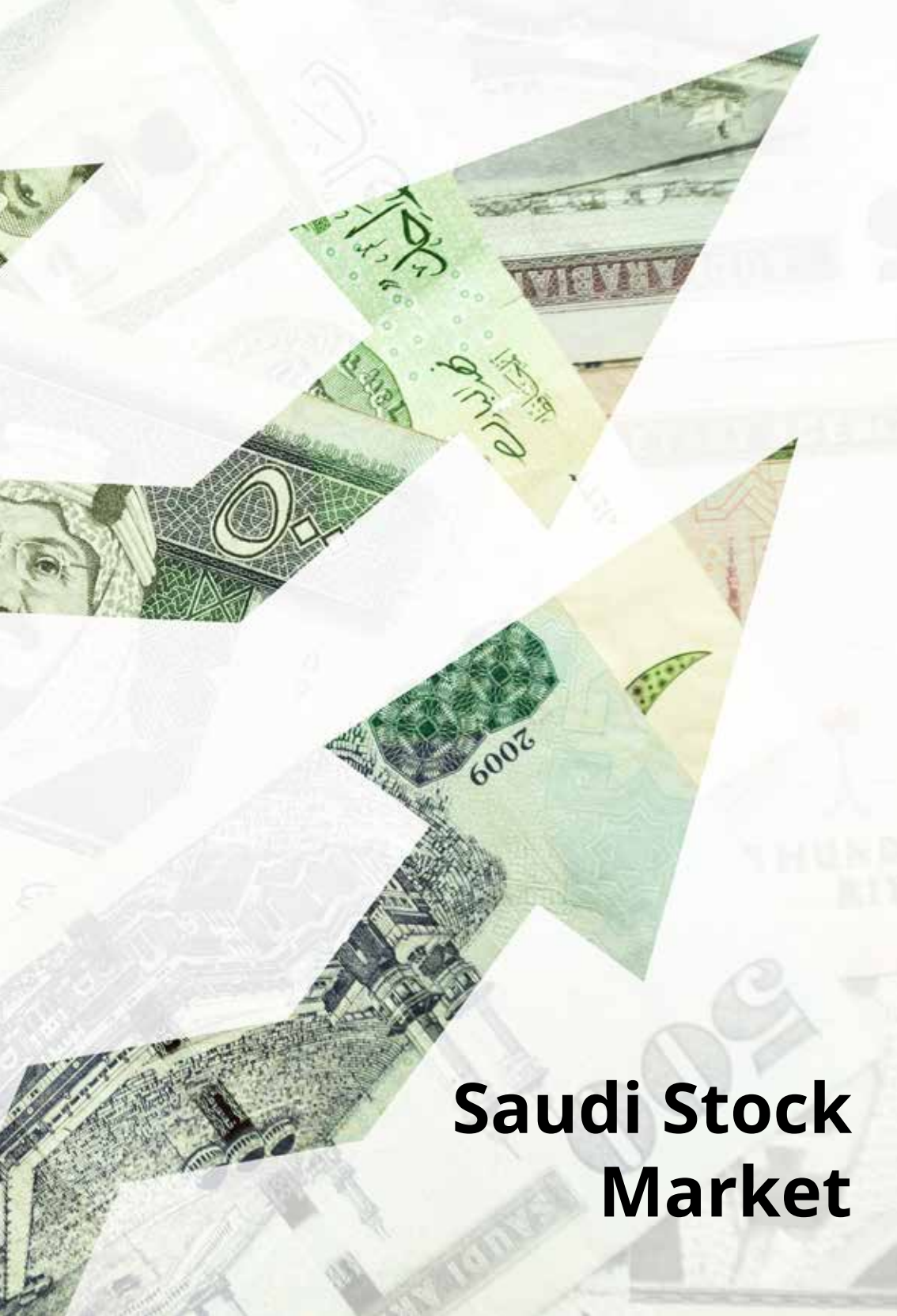
ARABIAN MONEY

130050/060041

مؤسسة النقد العربي السعودي
البنك المركزي
100

100
مئة
100

100
100
FIVE HUNDRED
RIYALS



Saudi Stock Market

Saudi Stock Market Open For Foreign Investment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750억불의 시장가치를 지니며, 걸프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Tadawul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은 2015년 유가급락으로 인해 Tadawul 주가지수 (Tadawul All Shares Index; 이하 "TASI")가 급락하면서 불안정함을 드러냈고,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의 주가변동 폭이 비합리적임을 지적했습니다.

Tadawul의 주요 투자자들은 단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현지투자자들입니다.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 금융감독청인 CMA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일정 기간동안 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스왑 (equity swap)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스왑은 제도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주권리 (shareholder rights)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CMA의 예상과는 달리 투자장려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2014년 CMA는 일부 허가받은 해외기관이 기관·고객사를 대신하여 Tadawul 에서 상장주식을 자유롭게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Tadawul 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안정성 개선 및 가격변동성 축소
-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 전문성 제고
- 상장기업들의 실적 향상
- 상장기업들의 기업경영 및 투명성 제고
- Tadawul의 국제등급향상

2015년 CMA는 2015년에 공표된 결의안 (Resolution No. 1-42-2015, 2016년 9월에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적격 해외금융기관의 상장주식 투자관련규정 (Rules for Qualifie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ments in Listed Shares)"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적격 외국인투자자 (Qualified Foreign Investor; 이하 "QFI")의 등록요건 및 절차 설명 (QFI는 해당 규정에 따라 CMA에 등록된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QFI의 상장주식 투자에 요구되는 승인절차, 요건 등 설명
3. 사우디아라비아 내 QFI를 관할하는 증권기관의 의무 규정

해당 규정 하에서, 투자자들은 의결권, 이사회 임명권, 의결권 교환 등을 포함한 주주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식스왑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FI는 2017년 1월부터 기업공개의 일환으로 Tadawul에 상장된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투자제한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QFI는 Tadawul에 상장된 모든 주식·전환사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외국인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유무에 관계없이 Tadawul에 상장된 모든 주식·전환사채 매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보유 주식·전환사채의 총합이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FI에 의한 투자는 JSC의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기타 규제기관 및 주식발행기관의 규정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FI 등록요건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as a QFI)

외국인투자자는 QFI 적격심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앙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종합 증권·금융회사, 펀드매니저 또는 보험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CMA와 동일한 관리기준을 지닌 규제관련 부서로부터 관리·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소 자산이 10억불에 달해야 합니다.
3. 증권 및 투자관련 분야 내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GCC 국적을 보유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므로,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FI 등록신청의 경우, CMA로부터 인가받은 심사관이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후 CMA가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합니다.

2016년 8월에 신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공개 상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i-Corruption Laws

Anti-Corruption Laws

최근 몇 년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공부문 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주요 법은 1977년에 공표된 공공서비스법 (Civil Service Law)과 1992년에 공표된 반뇌물수수법 (Anti-Bribery Law)입니다.

공공서비스법 하에서, 공무원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반뇌물수수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혜택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개인·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공무원 (Public Officials)

반뇌물수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군을 공무원 (Public Officials)으로 분류합니다:

- 정부 혹은 정부 산하기구의 계약직/정규직
- 정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임명된 중재자/전문가
- 정부기구의 위원 또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 다음과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이사회 의장 및 임원: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뇌물의 유형 (What must be received to constitute a bribe?)

반뇌물수수법에 따르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위한 물품은 모두 뇌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뇌물에는 약속, 선물, 보상금, 청탁 또는 추천 등이 있으며, 업무촉진용으로 지급되는 모든 물품도 뇌물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범죄 (Crimes by Public Officials)

본인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업무수행 또는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뇌물수수자 (bribe taker)로 분류하며, 공무원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뇌물수수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명령, 의사결정, 면허, 구매계약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본인 혹은 타인을 위해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범죄에 속하며, 해당 범죄에는 실제 지위 및 권력을 사용하려는 시도 역시 포함됩니다.

공무원 범죄의 처벌 (Penalties for Crimes by Public Officials)

반뇌물수수법 하에서는 주요 범죄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가장 과중한 처벌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10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6억원)입니다. 처벌강도가 약한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과 1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케이스에 적용되는 처벌 외에도, 공무원은:

-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향후 업무수행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 처벌집행 5년 후에는 각료회의의 검토를 통해 처벌내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뇌물수수를 통해 얻은 모든 혜택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기타 범죄 (Other Crimes)

정부입찰 및 계약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은 모든 공무원과 뇌물수수에 연루된 상대방은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5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력행사 및 협박 (Use of Force and Threats)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위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당사자는 반뇌물수수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뇌물수수 관련 당사자 (Parties to the Bribe)

뇌물 증여자와 뇌물수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반뇌물수수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로 뇌물수수를 도운 당사자 및 실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 후에 가담한 당사자 모두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뇌물수수의 목적을 알고도 뇌물 증여자의 지시로 인해 뇌물을 받은 당사자들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지만, 거절당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만 사우디 리알 (한화 약 2.6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s)

뇌물수수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이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뇌물수수를 입증한 경우, 최대 5,000 사우디 리알 (한화 약 130 만원)과 몰수당한 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각료회의 승인 후,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는 부서 재량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뇌물 증여자 또는 공무원을 제외한 뇌물수수 연루자가 뇌물수수 행위를 미리 내무부에 알릴 경우, 반뇌물수수법 하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죄자 (Recidivist Offenders)

이미 뇌물수수에 연루된 공무원이 처벌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뇌물수수법 하에서는 이를 상습범죄자 (Recidivist Offenders)로 분류하며, 이전의 처벌의 2배에 달하는 막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뇌물수수에 연루된 기업 (Consequences for Companies)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은 뇌물의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구와의 계약체결에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각료회의는 이전의 판결집행 5년 후, 위에서 언급한 계약체결의 제한여부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수수 판결 공시 (Public Announcements of Bribery)

반뇌물수수법 위반에 대한 판결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에서 공시합니다.

© Al Tamimi & Company. All rights reserved 2018.

The content of this book are not intended to be a substitute for specific legal advice on any individual matters.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for individual use and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The permission to recopy by an individual does not allow for incorporation of the material in part or in whole of any work or publication, whether in hard copy, electronic or any other form, unless specific mention is made to the source, "Doing Business in Dubai, published by Al Tamimi & Company," and written permission is granted by the fir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www.tamimi.com



التاميمي و شركاه
AL TAMIMI & CO.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